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송언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671

발의연월일: 2021. 6. 8.

발 의 자: 송언석·윤창현·박성민

김용판 · 성일종 · 김정재

김석기 · 정진석 · 허은아

박덕흠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수용 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,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 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상이 가 능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직원이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투기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상받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토지의 보유기간, 거주·영농 등 토지 용도에 맞게 이용한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토지소유자에 한하여 토지로 보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공개정보 등을 이용한 부동산 투기행위를

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63조제1항).

법률 제 호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3조제1항제1호 전단 중 "「건축법」"을 "토지의 보유기간, 거주·영 농 등 토지 용도에 맞게 이용한 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「건축법」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에 관한 적용례) 제63조제1항제1호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3조(현금보상 등) ① 손실보상	제63조(현금보상 등) ①
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	
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	
으로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	
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로서	
사업시행자가 해당 공익사업의	
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과 사업	
계획 등을 고려하여 토지로 보	
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	
유자가 받을 보상금 중 본문에	
따른 현금 또는 제7항 및 제8	
항에 따른 채권으로 보상받는	
금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	
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과	
절차에 따라 그 공익사업의 시	
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할	
수 있다.	
1.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	1
자: <u>「건축법」</u> 제57조제1항	<u>토지의 보유기간, 거주·영농</u>
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	등 토지 용도에 맞게 이용한
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	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
에게 양도한 자가 된다. 이	요건을 갖춘 자로서 「건축
경우 대상자가 경합(競合)할	법

때에는 제7항제2호에 따른 부 재부동산(不在不動産) 소유자 가 아닌 자로서 제7항에 따라 채권으로 보상을 받는 자에게 우선하여 토지로 보상하며, 그 밖의 우선순위 및 대상자 결정방법 등은 사업시행자가 정하여 공고한다.

② ~ ⑨ (생 략)

2. · 3. (현행과 같음)
② ~ ⑨ (현행과 같음)